

청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나1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20. 5. 14.

판결 선고 2020. 6. 11.

제 1 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40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경 인테리어업자인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가스, 배관설비, 전기통신 공사를 공사대금 171,000,000원에 도급하고, 같은 날 공사대금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지하층의 원룸을 상가, 사무실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공사')를 도급하되, 그 공사대금은 철거비, 자재·인건비 등을 추후 실경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비 등 명목으로 2015. 11. 26. 2,500,000원, 2015. 12.

2. 15,600,000원, 2015. 12. 9. 35,000,000원, 2016. 2. 5. 16,000,000원 등

합계 69,100,000원을, 자재·인건비 명목으로 2016. 4. 22.부터 2016. 6. 11.까지

합계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도변경공사에 따라 실경비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부풀려 원고로부터 건자재비 명목으로 66,969,000원(=피고가 건자재비 명목으로 수령한 114,386,300원 - 실제 지출한 건자재비 47,417,300원)을, 철거비 명목으로 53,110,000원(= 피고가 철거비 명목으로 수령한 69,100,000원 - 실제 지출한 철거비 15,99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건자재비의 경우 피고가 자재판매상인 C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47,417,300원에 불과한데도, C으로부터 건자재비로 114,386,3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간별거래보고(갑 제2호증의 2)를 받아 이를 2016. 7. 초순경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였다.

철거비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정산요구를 거절하다가 2016. 5.경 원고에게 증빙자료로 철거업자인 E이 작성한 청구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청구서상 피고가 실제 지출한 철거비는 15,990,0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건자재비와 철거비 합계액 120,079,000원(= 66,969,000원 + 53,110,000원)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철거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폐기물처리 및 철거비 정산내역서에 2015. 12. 1. G에게 천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2,500,000원, 2015. 12. 9. H에게 지하와 1층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15,600,000원, 2015. 12. 11. E에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35,000,000원, 2016. 2. 6.E에게 마무리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철거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인 2016. 1. 5. G에게 2,500,000원을, 2015. 12. 9. H에게 15,600,000원을, 2015. 12. 11.부터 2016. 1. 12.까지 4회에 걸쳐 E에게 합계 35,000,000원을, 2016. 3. 4. E에게 12,000,000원을, 2016. 4. 25. E에게 4,4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철거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부철거공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여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15,990,000원만을 철거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지출할 것보다 과다하게 철거비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자재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별 거래보고를 제출한 때는 2016. 7. 초순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자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2016. 4. 22.부터 2016. 6. 11.까지의 기간 이후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기간별 거래보고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건자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였다거나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과다하게건자재비 명목의 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재·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230,000,000원 중 114,386,300원이 오로지 C에 대한 건자재비 명목으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가 건자재비명목으로 받은 114,386,300원 중 47,417,300원만을 실제로 건자재비로 지출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자재비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태환, 판사 류연중, 판사 이성기